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71

발의연월일: 2024. 8. 20.

발 의 자:김승수·최수진·우재준

김소희 · 송언석 · 주진우

임이자 · 김상훈 · 김예지

이달희 • 한기호 • 박성민

권영진 · 김희정 · 조승화

서지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 흡입·거래, 자살 시도 방법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 및 제6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제6호의2,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6호의5"로 한다.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 호에 따른 자살유발정보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의4 또는 제6호의5에 해당되는 사정을 신고 또는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삭제·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등) ①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3. (생 략)	1. ~ 6의3.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
	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u><신 설></u>	6의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
	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살유발
	<u>정보</u>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	②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u>제6호의2,</u>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6호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u>5</u>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	
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	

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 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u><신 설></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1(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의4 또는 제6호의5에 해당되는 사정을 신고 또는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삭제·임시조 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